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## 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이영재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## 보도자료

## 2020. 6. 24.

### 제목

#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수수한 경찰관 관련 수사 결과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(부장검사 김정헌)는 불법 성인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사건을 수사한 결과,
  -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, 단속정보를 유출한 **경찰관 1명**,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**오락실 업주 3명**, 오락실 업주와 경찰관을 연결한 **조직폭력배 등 브로커 3명**, 경찰관의 도피를 도운 **조직폭력배 등 범인도피사범 2명** 및 경찰관의 비호로 불법 오락실을 영업한 **오락실 업주 3명** 총 **12명**을 기소하였고, 그 중 **경찰관 1명, 브로커 2명** 총 **3명** 구속기소,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음
  - 위 12명은 순차 기소되었는바, 그 중 경찰관 1명, 브로커 2명, 뇌물 공여자 2명, 불법 오락실 운영자 1명 총 6명은 먼저 기소되어 1심에서, 경찰관은 징역 3년 등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5명도 모두 유죄 선고되었음

###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- 총 12명, 구속기소 3명, 불구속 기소 9명

- A경찰관은 2019. 4. ~ 5.경 오락실 업주인 B, C, D로부터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, 단속 무마, 경쟁업소 단속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,5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,

- 위 업주 B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어 오락기를 빼돌리게 하는 한편, 그 수사정보를 알려주어 수사에 대비하게 하기도 하였음
  - 또 丁오락실 업주 J에 대한 단속 정보를 해당 오락실의 압수수색 전날 브로커 G에게 알려주어 위 업주 J가 오락기를 미리 빼돌릴 수 있도록 하였음
  - A경찰관에 대한 금품 전달에 관여한 브로커가 3명(E, F, G)이 있었는데, 그 중 1명(F)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으며, 위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최근 2020. 6.경 체포, 구속되었음
  - 한편, 위 경찰관은 2019. 12.경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도주하여 2020. 3.경 체포, 구속되었는바, 도주 기간 동안 위 F와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K는 위 A가 은신할 도피처를 제공하기도 하였음
- ※ 위 혐의에 관련된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는 별지와 같음**

## II 수사 및 재판 경과

- 2019. 12. 제보 접수
- 2019. 12. 경찰관 A 도주
- 2020. 2.~5. A, E 구속기소, G, B, C, H, I, J 불구속기소 등 순차 기소
- ※ 주요 피고인의 1심 선고형 : A(징역 3년), E(징역 8월), B(징역 8월, 징역 2년), C, G(징역 6월, 징역 2년) 등
- 2020. 6. 23. F 구속기소, D, K, L 불구속 기소

## III 참고사항

- 경찰관 A는 검찰 수사를 피해 3개월 간 도주하였으나, 검찰은 특별 검거팀을 구성하여 A를 검거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A의 도주를 도운 폭력조직 행동대원 1명을 범인도피로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경찰관 A가 본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2,500만 원을 모두 추징·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일체를 박탈하였음
- 오락실 업주 D로부터 경찰관 A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F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음 ☑

(별지)

순번	성명	지위	범죄사실 요지	비고
1	A(49세)	경찰관(경위)	2019. 4. ~ 5.경 오락실 업주인 B, C, D으로부터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, 단속 무마, 경쟁업소 단속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,5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사정보를 B 등에 누설하여 <b>뇌물수수, 공무상비밀누설</b> 등	2020. 6. 판결선고 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2,585만 원
2	B(49세)	甲 오락실 업주	2019. 2. ~ 9.경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,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경찰관 A에게 합계 2,500만 원을 교부하여 <b>뇌물공여</b> ※ 공여액 : B(1,700만 원), C(700만 원), D(100만 원)	2020. 6. 판결선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
3	C(49세)	乙 오락실 업주		2020. 6. 판결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
4	D(51세)	丙 오락실 업주		2020. 6. 23. 불구속 기소
5	E(50세)	브로커	2019. 5.경 B, C, D로부터 경찰관 A에게 전달할 약 2,000만 원을 교부받아 <b>제3자뇌물취득</b>	2020. 2. 판결선고 징역 8월
6	F(48세)	브로커, 폭력조직원	2019. 7. ~ 9.경까지 D로부터 공무원인 경찰관 A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원을 수수하여 <b>변호사법위반</b>	2020. 6. 23. 구속기소
7	G(50세)	브로커	2019. 2.경 B로부터 경찰관 A에게 전달할 약 600만 원을 교부받아 <b>제3자뇌물취득</b>	2020. 6. 판결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
8	H(49세)	甲 오락실 운영	2019. 4. ~ 9.경 게임기 수십대를 제공하고,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%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하도록 하여 <b>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</b>	2020. 5. 불구속 기소
9	I(44세)	丙 오락실 운영		2020. 2. 불구속 기소
10	J(47세)	丁 오락실 업주		2020. 3. 통상회부
11	K(48세)	폭력조직원	공모하여 2020. 1.경 경찰관인 A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피처를 제공하여 <b>범인도피</b>	2020. 6. 23. 각 불구속 기소
12	L(48세)	고물업		